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07
----------	------

2021년 3월 4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5. 정진술 의원(고병국 의원 등 11명 찬성)
- 나. 회부일자 : 2021. 2. 9.
- 다. 상정 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1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법률 제 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음.

### 2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 신설 목적과 취지

- 본 개정안이 개정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법」<sup>1)</sup>(2022. 1. 13. 시행)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음(제26조).<sup>2)</sup>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주민의 정보 격차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sup>3)</sup>

1) 해당 「지방자치법」은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2일 공포된 법임.

2)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2020.9.)에서 “특히 자치사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 즉, 해당 조문 신설은 정보 공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지역별 편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짐.
- 이러한 목적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시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에서도 확인 가능함.

**3**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정보공개법」에 따라 조례로써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sup>4)</sup>
-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외에도 개별 조례와 회의 규칙을 통하여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선제적으로 ▶계약투명성 심의회 회의록, ▶공무국의외활동 계획 및 결과, ▶연간 공무국의외활동 기본계획, ▶의회 출석일수, ▶국내외 활동보고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연구용역 기본계획 및 결과물과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정하였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한 것은

---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보가 지역별 편차 없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 라고 밝힘.

4)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가까우며<sup>5)</sup>,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시민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지방자치법」(2021. 1. 13. 시행) 제26조제2항)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의 주축 중 하나인 주민자치 실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정보공개 범위와 과정 등 시스템 구축 전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총괄 담당에게 확인(확인일자: 2021. 2 .16., 044-205-3307).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0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권영희, 김화숙,  
문병훈, 박순규,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임종국,  
전병주, 최 선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4조의2(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u>  <u>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u>  <u>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u>  <u>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u>  <u>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u>  <u>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u>  <u>한다.</u></p>